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밸류웨이증권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전	변경 후
제22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	<u><삭 제></u>
제22조의 3 (수익증권의 전환) ① ~ ④ (생 략)	<u><조번 변경></u> 제22조의 <u>2</u> (수익증권의 전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u>